

2026년 효자도서관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최종합격자 공고

2026년 효자도서관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28일

전 주 시 장

1 최종합격자 명단 : 1명

근무기관	응시번호	성명
효자도서관	01	오○민

※ 예비합격자 해당사항 없음

2 합격자 제출서류

- 기 간 : 2026. 1. 29. ~ 1. 30.
- 장 소 : 효자도서관
- 제출방법 : 본인 직접 방문 제출
- 제출서류
 - 채용신체검사서 1부(보건소 또는 병원 발행/국가검진결과로 대체 가능)
※ 판정결과 적합 또는 합격 내용 포함되어야 함
 - [붙임 1]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
 - [붙임 2] 부정합격자 합격·채용 취소 확인서 1부
 - [붙임 3]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
 - [붙임 4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채용자용) 1부

3 채용서류의 반환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채용 서류 반환청구 기간 (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)이내에 서류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반환신청을 하지 않을 시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됩니다.
- 방법 :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붙임2] 제출
 - ※최종합격자는 해당사항 없음
 - 제출서류를 직접 반환 또는 일반우편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음 (단, 특수우편물의 경우 응시자 부담)

4 기타사항

- 이의신청기간 운영
 - 신청기간: 2026. 1. 29. ~ 2. 2.
 - 신청대상: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가 아니면서, 본인이 제기한 사항에 한해 이의신청 내용 검토 및 답변
- <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>

 - 채용전형 불합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
 - 심사위원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 -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, 정보 요구 등
 -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- 신청방법: 이의신청서[붙임6] 작성 후 지원자 본인 서명한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 (sohyun97@korea.kr)
 - 문의처: 도서관운영과 효자도서관팀 담당자(063-281-6492)

【붙임 1】

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서식] <신설 2018. 3. 21.>

(앞쪽)

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
대상자	성 명(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)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/국적)
	연락처(휴대전화 등)

본인은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도서관운영과의 취업자등으로서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전주시 도서관본부 도서관운영과의 취업(예정)자 또는 노무 제공(예정)자로서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.

2025 년 월 일

동의자

(서명 또는 인)

○○ 경찰서장 귀하

유의사항

- 개인정보 수집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)
-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: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,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.
-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【붙임 3】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전주시 도서관운영과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전주시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- **관련근거** : 전주시 공무원 관리규정 제14조
전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
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

□ **결격사유**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7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0.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11. 경력,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
12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20 년 월 일

채용예정자

(서명)

전주시장 귀하

【붙임 5】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 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 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전주시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【붙임 3】

【붙임 6】

이 의 제 기 신 청 서

성 명		생년월일	년 월 일
연락처		이메일	
이의신청 내용	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히 기재		
년 월 일			
신청인 (서명)			